

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nn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9. 11. 29

제 출 자 : 달성군



1. 제안이유

달성군 시설관리공단에서 청소년 시설을 수탁관리하기 위해 사업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1조 목적에 ‘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부응하고’로 수정하여 대상을 명확화 함.

나. 제19조 공단의 사업에 ‘청소년 수련시설 운영’을 추가함.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공기업법 제104조 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(2) 입법예고(2019. 10. 24. ~ 11. 7.)결과 : 의견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중“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”을“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 및 청소년 보호육성에 기여함”으로 한다.

제19조(사업) 제6항 “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”을 “청소년 수련시설 운영”으로 하고 제7항을 신설하여 “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 <u>및 청소년 보호육성에</u> -----.
제19조(사업)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 1. 문화·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2.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3.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사업 4. 공원·유원지와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사업 5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 6.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	제19조(사업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6. <u>청소년 수련시설 운영</u> 7. <u>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</u>

□ 지방공기업법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